

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가단5099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김혜연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원상회복하고, 원물을 반환하라.

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채무금 59,544,2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44,2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용인시 기흥구 D 대지 252㎡와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원고의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하자, 2017. 10. 17. 소외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75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21.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33,128,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11. 2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7. 21. 수원지방법원 2020카합20526호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8755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401,713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5. 7. 17.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8. 5. F에게 2015.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의 남편 G은 소외회사의 사내이사인 H의 부탁을 받고 아내인 피고 명의로 2016. 7. 9. 소외회사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9.부터

2018. 7.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5.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6.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와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6. 7. 9.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외회사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채무면탈을 돕기 위해 이 사건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등의 범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및 집행이 방해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9,544,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24.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6. 7. 9.경 있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4. 2.

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4. 30. 소외회사로부터 원고의 단독주택을 매수하고, 2017. 10. 17.이

되어서야 소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2016. 7. 15.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남편인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G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단독주택은 2015. 7. 17.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5. 8. 15.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등기부 등본의 기재와 달리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이 사건 단독주택의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G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제공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E, H와 강제집행면탈 등을 적극 공모하였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별지